

대출계약철회권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한국투자캐피탈입니다.

항상 저희 한국투자캐피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“대출계약철회권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“대출계약철회권”이란 고객님(개인고객에 한함)께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▣ 주요 내용

- ◆ 적용 대상 : 개인 대출 고객 (개인사업자, 법인 제외)
- ◆ 적용 상품 :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, 2억원 이하 담보대출
(시설대여(리스), 기타 협약대출 등 제외)
- ◆ 철회 절차 : 대출계약일(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)부터 14일
이내 철회 의사표시(신청)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

[상환금액 : 철회시점의 원금 + 이자, 부대비용*]

* 근저당설정비용, 담보조사(감정)비용, 임대차조사비용, 수입인지(50%), 보증·보험료, 기타 고객에게 제공된 재화·용역 등

- ◆ 신청 방법 : 서면(우편), 방문, 전화(영업담당자)로 철회신청
- ◆ 철회 횟수 제한 :
 -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
 -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